

의안번호	2207746
의 퇴 인	주철현 의원
회 답 일	2025. 2. 19.
추계번호	25G0476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자영업민 지방세 감면·농어업인 등 용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및
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－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자영업민 지방세·농어업인 용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및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234.4억원, 2029년 385.9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4년간 총 1,819.9억원(연평균 45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-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감소 효과는 징수기준(전년 귀속소득)으로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8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자영업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)	-26.4	-24.4	-23.4	-	-74.2	-24.7
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0조제1항)	-208.0	-208.0	-208.0	-	-624.0	-208.0
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67조)	-	-362.0	-373.8	-385.9	-1,121.7	-373.9
합 계	-234.4	-594.4	-605.2	-385.9	-1,819.9	-455.0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(자영업민 등에 대한 감면)	○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9조제2항)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 ○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9조제3항)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

2	안 제10조제1항 (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관련 감면 등)	○ 농어업인(영농조합법인,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포함) 용자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
3	안 제167조 (조합법인 등에 대 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)	○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(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)	○	
2	안 제10조제1항 (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관련 감면 등)	○	
3	안 제167조 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될 것을 전제로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

○ 개정안에 따른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감소 효과는 징수기준으로 2027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

□ 향후 자영어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은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

○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

- － 취득세는 최근 5년간(2019~2023년)간 감면실적 감소추세(연평균 -8.5%)만큼 감소한다고 가정
- － 재산세는 최근 5년간(2019~2023년)간 연평균액(8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- － 지역자원시설세는 최근 5년간(2019~2023년)간 연평균액(1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
-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액
 - 취득세는 최근 5년간(2019~2023년)간 연평균액(0.3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등록면허세는 최근 5년간(2019~2023년)간 연평균액(0.1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- 향후 농어업인 용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액은 최근 5년간(2019~2023년)간 연평균액(208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- 향후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
 -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과세특례를 적용한 경우와 일반법인의 세율체계를 적용한 경우의 산출세액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
 - 조합법인의 실적은 조세지출예산서상 법인세 과세특례 실적*을 추계에 활용하되,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일반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인하되었음을 감안하여 2023년 이전 감면실적을 현행 세율에 맞춰서 조정하여 활용
 - ※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실적은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특례 실적에 10% 수준으로 가정
 - 2023년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중간예납분은 직전연도 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었다고 가정
 - 향후 과표구간별 조합법인의 분포는 2023년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
 - 조정된 과세특례의 실적을 바탕으로 최근 5년('20~'24년)간의 실적 증가 추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자영어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(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)

(1) 소형어선 지방세 감면(안 제9조제2항)

(가)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 개요)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

○ 적용기간: 현행 2025년 12월 31일 →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

□ (감면실적)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

- 취득세에 대한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은 2019년 31억원, 2023년 22억원으로 감소추세(연평균 -8.5%)
- 재산세에 대한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은 2019년 7억원, 2023년 8억원으로 연평균 8억원으로 나타남
-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은 2019년 1억원, 2023년 1억원으로 연평균 1억원으로 나타남

[표 2] 최근 5년간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지방세 감면실적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증감율/ 연평균액
취득세	31	30	27	27	22	-8.5%
재산세	7	8	8	8	8	8
지역자원시설세	1	1	1	1	1	1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년도

(나) 추계방법 및 결과

□ 향후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2026년 26억원, 2028년 23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총 73억원(연평균 2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- 취득세는 최근 5년간(2019~2023년)간 감면실적의 감소추세(연평균 -8.5%)를 반영하여 추계
- 재산세는 최근 5년간(2019~2023년)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(8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- 지역자원시설세는 최근 5년간(2019~2023년)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(1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3] 향후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액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취득세 감소액	17	15	14	46	15
재산세 감소액	8	8	8	24	8
지역자원시설세 감소액	1	1	1	3	1
합 계	26	24	23	73	24

(2) 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지방세 감면(안 제9조제3항)

(가)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 개요)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, 어업권·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면제

○ 적용기간: 현행 2025년 12월 31일 →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

- (감면실적)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·등록면허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

- 취득세에 대한 최근 3년간 감면실적은 2021년 0.2억원, 2023년 0.2억원으로 연평균 0.3억원으로 나타남
- 등록면허세에 대한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은 2019년 0.1억원, 2023년 0.1억원으로 연평균 0.1억원으로 나타남

[표 4] 최근 5년간 어업권·양식업권의 지방세 감면실적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액
취득세	0	0	0.2	0.6	0.2	0.3
등록면허세	0.1	0.1	0.1	0.1	0.1	0.1

주: 취득세 연평균액은 2019년 및 2020년 취득세 감면실적이 없는 관계로 최근 3년간(2021~2023년)의 연평균액임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년도

(나) 추계방법 및 결과

- 향후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감면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2026년 0.4억원, 2028년 0.4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총 1.2억원(연평균 0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취득세는 최근 3년간(2021~2023년)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(0.3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지역자원시설세는 최근 5년간(2019~2023년)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(0.1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5] 향후 어업권·양식업권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액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취득세 감소액	0.3	0.3	0.3	0.9	0.3
등록면허세 감소액	0.1	0.1	0.1	0.3	0.1
합 계	0.4	0.4	0.4	1.2	0.4

(3) 추계결과

- 향후 자영어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2026년 26.4억원, 2028년 23.4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총 74.2억원(연평균 24.7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6] 향후 자영어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액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소형어선의 지방세 감면	26	24	23	73	24
어업권 등 지방세 감면	0.4	0.4	0.4	1.2	0.4
합 계	26.4	24.4	23.4	74.2	24.7

나. 농어업인 용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(안 제10조제1항)

(1)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□ (제도 개요) 상호금융기관이 농어업인에게 용자 시의 용자담보물에 대한 등기(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 포함)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

○ 감면액: 등록면허세의 50%

○ 적용기간: 현행 2025년 12월 31일 →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

□ (감면실적) 농어업인 용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은 2019년 236억원에서 2023년 130억원으로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

[표 7] 최근 5년간 농어업인 용자담보물 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추이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액
감면실적	236	252	260	163	130	208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년도

(2) 추계방법 및 결과

□ 농어업인 용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2026년 208억원, 2028년 208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총 624억원(연평균 20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○ 농어업인 용자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최근 5년간(2019~2023년)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(208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8] 향후 농어업인 용자담보물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액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등록면허세 감소액	208	208	208	624	208

다.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(안 제167조)

(1)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□ (제도 개요) 농업협동조합·수산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일반법인과 달리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간소화하고,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특례

- 일반법인과 달리 조합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시 당기순이익에서 기부금, 접대비 등 8가지 항목만을 손금불산입하고, 0.9~1.2%의 저율과세 적용

[표 9] 일반법인과 조합법인 과세체계 비교

		일반법인	조합법인
적용대상		일반법인	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중소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, 연연초생산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
과세표준		당기순이익 +익금산입 - 익금불산입 - 손금산입 +손금불산입 =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-이월결손금 - 비과세소득 - 소득공제 = 과세표준	당기순이익 +손금불산입(기부금 등 8개항목 ¹⁾) = 과세표준
과표 구간별 세율	2억원 이하	0.9% ²⁾	0.9%
	2~20억원	1.9% ²⁾	
	20~200억원		1.2%
	200~3,000억원	2.1% ²⁾	
	3,000억원 초과	2.4% ²⁾	

주: 1) 기부금, 접대비, 대손금, 대손충당금, 과다경비, 업무무관비용, 지급이자,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
2) 2022년 세법개정 이전에는 각각 0.1%p씩 상향된 세율 적용

□ (특례실적)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실적은 2020년 327.1억원 수준에서 2023년 511.3억원으로 증가한 후, 2024년 328.9억원 수준

-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실적은 「조세지출예산서」상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특례 실적에 10%를 적용하여 산정
- 2024년 특례실적 감소는 법인실적의 부진 외에도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

일반법인에 대한 세율 인하가 2023년 귀속소득부터 반영된 결과

[표 10]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: 지방소득세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0	2021	2022	2023	2024(잠정)
과세특례 실적	327.1	334.7	423.0	511.3	328.9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-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우선 2020~2023년간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실적을 조정한 후, 2020~2024년간 조정실적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정
 - 2023년 법인세 신고자료 기준으로 산정한 과표구간별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실적은 다음과 같음

[표 11] 조합법인의 과표구간별 과세표준, 세율 및 산출세액: 2023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별	법인수 (개)	과세표준 (억원)	과세특례 적용		과세특례 미적용		세수효과 (A-B)
			세율 (%)	산출세액 (A,억원)	세율 ¹⁾ (%)	산출세액 (B,억원)	
합 계	4,215	59,145	-	605.3	-	1,116.7	-511.3
2억원 이하	1,181	618	0.9	5.6	1.0	6.2	-0.6
2~20억원	2,273	19,307		174.0	2.0	340.7	-166.6
20~200억원	753	37,307	1.2	403.2		731.1	-327.9
200~3,000억원	8	1,913		22.5	2.2	38.7	-16.2

주: 1) 2023년 신고분은 2022년 귀속소득을 기반으로 신고됨에 따라 세법개정 이전의 세율이 적용되며, 중간
예납분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산출되었다고 가정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3년 과표구간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특례실적을 조정
 - 2023년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과표구간별 1인당 과세표준을 통해 세법개정 전후 일반법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

[표 12] 2022년 세법개정 효과에 따른 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 조정내역: 2023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별	법인수 (A,개)	과세표준 (B,억원)	1인당 과세표준 (C=B/A, 억원)	특례 미적용시					
		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전	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후		
				세율 (D,%)	산출세액		세율 (D',%)	산출세액	
					1인당 (E=C ×D, 억원)	전체 (F=E ×B, 억원)		1인당 (E'=C ×D', 억원)	전체 (F'=E' ×B, 억원)
합 계	4,215	59,145	—	—	—	1,116.7	—	—	1,057.7
2억원 이하	1,181	618	0.5	1.0	0.01	6.2	0.9	0.004	5.6
2~20억원	2,273	19,307	8.5	2.0	0.2	340.7	1.9	0.2	321.5
20~200억원	753	37,307	49.5		1.1	731.1		1.0	693.8
200~3,000억원	8	1,913	239.1	2.2	5.5	38.7	2.1	5.2	36.8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— 이를 바탕으로 특례실적을 조정할 경우, 2023년 기준 11.5%의 실적이 하향 조정

[표 13]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실적 조정: 2023년 신고기준

(단위: 억원, %)

구 분	특례적용시 산출세액(A)	특례 미적용시				실적조정을 ([C-E]/C)
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전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후		
		산출세액(B)	특례실적 (C=A-B)	산출세액(D)	특례실적 (E=A-D)	
산출세액	605.3	1,116.7	-511.3	1,057.7	-452.4	-11.5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— 2023년 기준으로 2020~2023년간 감면실적을 조정하여 살펴보면, 최근 5년간 특례 실적은 연평균 3.2% 증가함

[표 14]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실적 조정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구 분		2020	2021	2022	2023	2024 (잠정)	연평균 증가율 ('20~'24년)
특례 실적	조정전(A)	327.1	334.7	423.0	511.3	328.9	—
	조정후 (A×[1-11.5%])	289.4	296.1	374.3	452.4	328.9 ¹⁾	3.2

주: 1) 2024년 실적은 세법개정이 적용된 2023년 귀속소득을 바탕으로 발생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향후 세수효과는 2024년 잠정실적에 최근 5년 연평균 감면실적의 증가율(3.2%)을 반영하여 추계

[표 15]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치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7	2028	2029
세수효과	-362.0	-373.8	-385.9

(3) 추계결과

-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소득세는 2027년 362.0억원, 2029년 385.9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1,121.7억원(연평균 373.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6] 향후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액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지방소득세 감소액	362.0	373.8	385.9	1,121.7	-373.9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최천규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838	choi1009@assembly.go.kr